

[서식6-3]

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

우리 시·군·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: 2021년 1월 ~ 12월(12개월)
-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- 보 수: 월 488,320 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
*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- 모집인원: 41명
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41명
- 모집분야
 - 복지일자리(참여형) : 직무- 급식보조원 2명, 환경정비 22명, 주차제도 2명, 주민자치 업무보조 15명
- 모집기간: 2020. 11. 25(수)~12. 9(수) 09:00~18:00(토,일제외)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- 신청자격
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 - 복지일자리(특수교육-복지연계형): '21년 기준 전공과 학생

* 단,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,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

-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 - *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「근로계약서」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(ex. '21년 신청자의 경우, '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-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-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 - *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「근로계약서」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 - *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-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-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-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, 안마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 - * 단,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
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

4. 제출서류

<<필수서류>>

① 참여신청서[서식7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8] ※ '참여신청서' 및 '개인정보동의서'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※ 신청자의 '장애인등록여부' 및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'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

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[서식9] 제출 필요

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
구분	증빙서류																							
①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	- 재학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		
② 자격증 소지자	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※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																							
③ 졸업예정자	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																							
④ 여성가장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첨 부 서 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배우자 무(無)</td> <td colspan="2">가족관계등록부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8">배우자 유(有)</td> <td>가출·행방불명</td> <td>실종신고서</td> </tr> <tr> <td>장애</td> <td>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</td> </tr> <tr> <td>질병으로 요양 중</td> <td>의사의 진단서</td> </tr> <tr> <td>군복무</td> <td>복무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학교 재학</td> <td>재학증명서</td> </tr> <tr> <td>교도소 입소</td> <td>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</td> </tr> <tr> <td>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</td> <td>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이혼소송 제기</td> <td>이혼소송확인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첨 부 서 류		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등록부		배우자 유(有)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의 진단서	군복무	복무확인서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구분	첨 부 서 류																						
	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등록부																						
	배우자 유(有)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																					
	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																					
	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의 진단서																					
		군복무	복무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
	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
	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																					
	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
이혼소송 제기		이혼소송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	
⑤ 취업지원대상자	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																							

	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--	---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<p>(참고) 여성가장 정의</p> <p>가. 이혼, 사별(死別)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</p> <p>나.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</p> <p>다.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(世帶)를 같이하는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·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, 질병, 군복무 및 재학(在學)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</p> <p>라.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</p> <p>※ 관련근거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,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</p>

- 접수방법: 방문접수
- 접수처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
- 문의: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장애인복지과(560-4314)

5. 기타 참고사항

-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'적극적인 구직활동'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<p>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</p> <p>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4세 이하(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 •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•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 •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-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- 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- 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- 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

-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**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**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- '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'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 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 -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(TEL. 560-43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25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